

법제팀장

<b>*</b> •			~ <u>~ ~ ~ ~ ~ ~ ~ ~ ~ ~ ~ ~ ~ ~ ~ ~ ~ ~ </u>	山からまなり	Blor 4 \$
지방행정주사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반경자	이정희	이윤영	김종순	이비오	01/06 정원오
<b>협</b> 문화체육교 조 규제개혁설	장 직무대리 실무전문관	이현식 권설아			

이상수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165		
결재일자	2015.1.6.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6호		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제정 계획



성 동 구

(기획예산과)

# 사 전 검토사항

::: 해당사항에 ☑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			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☑ 공약(약속)사업 □ 계속사업 □ 인센티브/공모사업 □			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● 구       민: 유□(       ) 무□         ● 전 문 가: 유□(       ) 무□			
	● 이해당사자: 유□( ) 무□			
기 타고 려 사 항	일 자 리 □ 환경영향 □ 안 전 □ 유지비용 □ 바른 공공언어 ☑ 성 인 지 □ 취약계층 □ 장 애 인 □ 디 자 인 □ 갈등발생 요인 □			
타자원 활용	● 중앙부처: 유□(       ) 무□         ● 서울시: 유□(       ) 무□         ● 기업: 유□(       ) 무□         ● 민간단체: 유□(       ) 무□			
언 론 홍 보	기획보도 □ 보도자료 □ SDTV □ 성동뉴스레터 □ 성동구소식지 □			
계 획	기 고 문 □ 전자행정서비스 □ SNS□ 기타(리플릿등) □ 없음 ☑			
● 홍 보 제 목 :				
<ul> <li>중점 홍보사항</li> <li>-</li> <li>-</li> <li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				

#### - 서울특별시 성동구 -

## 출자 -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시행2014. 9. 25.)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#### Ⅰ 추 진 근 거

- ☐ 「지방자치단체 출자1)·출연2)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#### Ⅱ 제 정 사 유

- 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정으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
- □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, 지도감독, 성과계약, 경영평가 등의 기준 마련

<sup>1)</sup> 출자기관: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

<sup>2)</sup> 출연기관: 지방자치단체가 문화, 예술, 장학,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

#### Ⅲ 주요내용

- ☐ 출자·출연 기관의 정의(안 제2조)
- ☐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(안 제3조~제7조)
  - O 임원의 해임 요구 등(안 제4조)
    - 구청장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
  -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(안 제5조)
    -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은 예산 범위에서 필수경비를 부담하도록 함
    - 사전조사와 용역, 시설비,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를 정함
- ☐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(안 제8조~제9조)
  - O 임 기: 2년(1회에 한하여 연임)
  - O 간 사: 출자·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
- ☐ 출자·출연 기관의 평가 등(안 제10조~제20조)
  - O 성과계약(매년 1월), 성과평가(매년 6월), 성과계약 평가결과 보수 반영
  - O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·운영(안 제10조 및 제11조)
    -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·통보, 경영목표 달성도, 성과계약 이행 등
    - 공무원, 대학 조교수 이상, 공인회계사 등으로 경영평가단 구성·운영

### Ⅳ 향후계획

■ 2015. 1. 8. ~ 1. 28.: 입법예고(20일) 및 규제심사·부패영향평가·

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

■ 2015. 2. 초순 : 조례규칙심의회 상정

교 2015. 2. 26. ~ 3. 2.: 제216회 임시회 의안 제출

□ 2015. 3. : 조례 공포

붙임 1.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

2. 관계 법령 발췌문 1부. 끝.